

변경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1. 집합투자기구 : **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 자(子)투자신탁 1 호[채권혼합]**
2. 효력발생일 : 2026 년 7 월 23 일
3. 정정사유
- 수익증권 매입 환매시 기준가 적용시간 변경(15:30 → 17:00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25조(판매가격)	① (생략)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<u>15 시 30분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<u>17 시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26조(환매업무)	①~⑤ (생략)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<u>15시 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⑦~⑨ (생략)	①~⑤ (현행과 동일)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⑦~⑨ (현행과 동일)
제27조(환매가격)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(<u>15시 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(토요일은 제외한다)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(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(토요일은 제외한다)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제28조(환매연기)	①~⑥ (생략)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전전전영업일 <u>15시</u>	①~⑥ (현행과 동일)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전전전영업일 <u>17시</u>

	<u>30분</u>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.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생략) ⑧ (생략)	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.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현행과 동일) ⑧ (현행과 동일)
부칙	<신설>	<u>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</u>